# 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7. 8(목)산업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6월 30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71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1차(2004. 7. 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. 3. 5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이전됨에 따라, 조례명 및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명중 "노인·아동"을 "노인"으로 변경
-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 수정(안 제1조 내지 제4조)
- 제3조 제3호의 "어린이집"을 삭제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년 3월 5일 부발읍 마암리 산21-1번지에 있는 근로자

종합복지관 내로 이전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중 「노인·아동」을 「노인」으로 하고

- 제1조 중 「이천시노인·아동」을 「이천시노인」으로 「이천시노 인·아동종합복지회관」을 「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」으로 하며,
- 제2조 중 「이천시노인·아동종합복지회관」을 「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 관」으로 하고 제3조 제3호를 삭제하며,
-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「노인·아동」을 「노인」으로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- 7. 기타사항 : 없 음